

2024년 디지털 혁신거점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공고

부산 지역 거점 디지털 신기술 분야 기업 성장 및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2024년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 7.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4년 디지털 혁신거점 선도기업 육성 지원

□ 사업목적

- 부산 신기술(AI, 디지털트윈,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분야 혁신기업 발굴 · 성장 지원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 2024. 12. 13.

□ 모집대상 : 공고일 기준 설립 7년 이내의 부산 소재 신기술(AI, 디지털트윈,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관련 법인 사업자

□ 모집규모 : 5개사

□ 지원금액 : 기업별 정부지원금 최대 14백만원 이내

□ 추진방향

- ①레벨업, ②글로벌 트랙 중 기업별 특화분야 지원 및 성장 로드맵 수립/이행
- 기업 맞춤형 코디네이팅 프로그램 연계 및 단계별 성장 지원을 통한 기업 스케일업 추진 ※ 우수과제 차년도 사업화 프로그램 또는 성과확산 연계 지원

구분	추진방향
레벨업(Level-UP) 트랙	성장 잠재력을 가진 베이비 유니콘 기업 대상 스케일업 지원 (성장 가능성 높은 혁신기업 → 예비 선도기업)
글로벌(Global) 트랙	해외 시장 진출 및 수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자 하는 기업 (글로벌 레퍼런스 확보 및 스케일업)

□ 추진방법

- 전문 코디네이터 매칭 및 우리 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화/글로벌화 사업 연계 트랙별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 및 수행

□ 주요 지원내용

- ① 레벨업(Level-UP), ② 글로벌(Global) 2가지 중 1가지 트랙 선택

레벨업(Level-UP) Track	글로벌(Global) Track
① 기업진단·BM분석 ② 성장 프로그램 설계·멘토링 ③ 투자·IR 피칭 트레이닝 ④ BM모델 고도화 ⑤ 사업화 로드맵 수립	① 기업진단·BM분석 ② 글로벌 프로그램 설계·멘토링 ③ 글로벌 시장조사 및 진출전략 수립 ④ 글로벌 IR·시장 테스트 ⑤ 글로벌화 로드맵 수립

※ 선정평가 평가위원 의견에 따라 지원 트랙은 변동될 수 있음.

2 세부내용

□ 세부 지원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진단) 기업 진단 분석을 통한 비즈니스 강점 극대화, 취약 부분 보완 등 코디네이팅 ○ (BM분석/고도화) 신기술 기반 BM 개발/고도화를 위한 컨설팅(기술, 법률, 시장, 투자유치 등) 및 정부 지원사업 계획서 작성 가이드 등 ○ (단기 로드맵 수립) KPI 설정·서비스 고도화·마케팅·투자유치 등 2개년('24~'25년도) 로드맵 수립 및 성과관리 지원
레벨업 (Level-UP) 트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 프로그램) 사업 모델의 시장·기술동향 분석을 통한 수요처 발굴, 타 정부지원 사업 연계 등 사업화 성장 전략 멘토링 ○ (투자·IR) IR 데모데이 행사 연계 신청서 작성, PR 컨설팅 등 기업 성장자금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 지원
글로벌 (Global) 트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진출 전략 컨설팅) 기업 진단 및 맞춤형 전략 수립을 통해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 ○ (현지 시장분석) 타겟지역 시장정보 분석/제공 및 시장성 테스트 지원 ○ (홍보마케팅 지원) 글로벌 전시회 참가·브로셔/카탈로그 등 해외 투자처 발굴을 위한 마케팅 활동 지원 ○ (글로벌 네트워킹) 잠재 수요처와의 비즈니스 매칭(IR 피칭, 바이어 상담회 연계) 및 통역·상담 가이드 제공

※ 세부 지원내용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성과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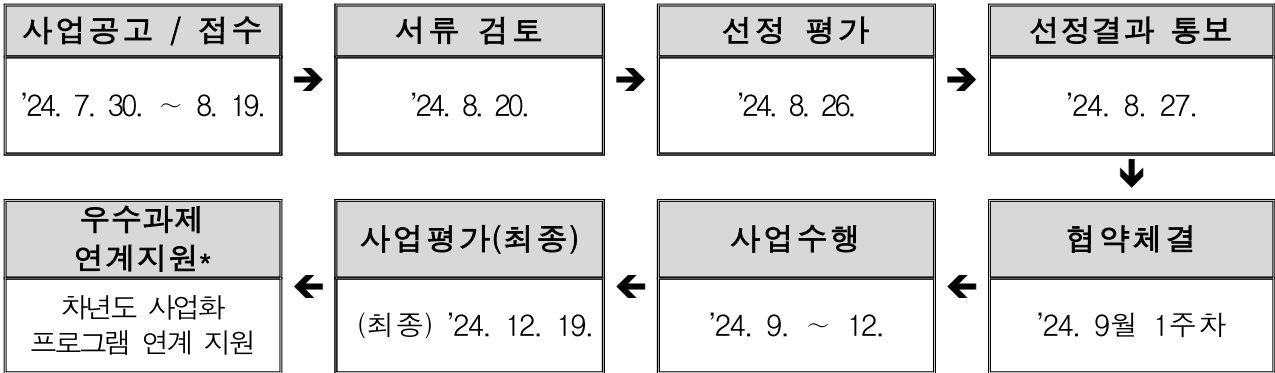
구분		내용
필수MBO	공통	<input type="checkbox"/> 성장 로드맵(~'25년) 수립 ※ '25년까지 실행 가능한 기업 성장 전략 로드맵 제출 <input type="checkbox"/> 직접고용 1명 ※ 직접고용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되는 신규인력으로 4대 보험 사업자명부로 확인 가능하여야 함 <input type="checkbox"/> 홍보·마케팅 2건(전시회 부스참가, 기획보도 등) <input type="checkbox"/> 수요처 발굴 1건, 고도화 1건, 상용화 성과 1건 ※ 실적 인정 기준 : 레벨업(국내), 글로벌(국외)에 해당하며, 추가 실적은 정성성적으로 인정
자율MBO	사업계획서 기반으로 사업성과, 인력수급, 산학연계 등 관련 성과목표 자율 제시	

□ 사업비 책정 유의사항

연번	내용										
1	<input type="checkbox"/> 사업비 책정 가능 기간 확인 : '24. 8. 1. ~ 12. 13.(사업종료일)										
2	<input type="checkbox"/> 지원 분야 외 항목 지원 불가(아래 참고) - 단순 경비성 지출(직무수행경비), 간접비, 유형자산, 업무추진비, 민간이전 - 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 특근매식비, 차량비, 복리후생비, 기타 운영비 등)										
3	<input type="checkbox"/> 인건비는 최대 2인 이내로 책정할 수 있으며, 대표자는 현물만 가능 ※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60% 이내로 편성										
4	<input type="checkbox"/> 부가세액, 관세액 불인정(매입세액공제로 환급가능함)										
5	<input type="checkbox"/>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규모 및 구성은 조정될 수 있음										
6	<input type="checkbox"/> 지원금 한도 초과금액의 경우 기업 자부담										
7	<input type="checkbox"/> 총 사업비 규모에 따른 정산위탁수수료 책정 : 600천원 ※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업비 규모 5천만원 미만은 표준 수수료 600천원 책정										
8	<input type="checkbox"/> 사업종료 이후에도 성과관리를 위한 실적(매출액, 사업화, 고용유지현황 등) 제출 필수										
참고	<input type="checkbox"/> 사업비 지원 예시										
	<table border="1"> <tr> <td>BM 개발 컨설팅비</td> <td>-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 비용(기술, 법률, 시장, 투자유치 등)</td> </tr> <tr> <td>지식재산권 확보비</td> <td>- 국내외 특허, 상표권 등록, 디자인 출원 등 지식재산권 확보 비용</td> </tr> <tr> <td>시제품/디자인 제작비</td> <td>- 제품 및 서비스의 시제품 제작, 디자인 설계, 컨설팅 비용</td> </tr> <tr> <td>시장·기술 동향조사</td> <td>-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동향조사보고서, 세미나, 전시회 참가 관련 비용</td> </tr> <tr> <td>기타</td> <td>- 이외 사업(과제) 관련 직접 비용</td> </tr> </table>	BM 개발 컨설팅비	-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 비용(기술, 법률, 시장, 투자유치 등)	지식재산권 확보비	- 국내외 특허, 상표권 등록, 디자인 출원 등 지식재산권 확보 비용	시제품/디자인 제작비	- 제품 및 서비스의 시제품 제작, 디자인 설계, 컨설팅 비용	시장·기술 동향조사	-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동향조사보고서, 세미나, 전시회 참가 관련 비용	기타	- 이외 사업(과제) 관련 직접 비용
	BM 개발 컨설팅비	-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 비용(기술, 법률, 시장, 투자유치 등)									
	지식재산권 확보비	- 국내외 특허, 상표권 등록, 디자인 출원 등 지식재산권 확보 비용									
	시제품/디자인 제작비	- 제품 및 서비스의 시제품 제작, 디자인 설계, 컨설팅 비용									
	시장·기술 동향조사	-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동향조사보고서, 세미나, 전시회 참가 관련 비용									
기타	- 이외 사업(과제) 관련 직접 비용										

3 추진일정(안)

□ 추진절차(안)



※ '24년 우수과제 대상 '25년 사업화 및 글로벌화 지원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사업신청 및 접수

□ 신청자격

< 지원기업 참여요건 >

공통사항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공고일 기준 설립 7년 이내의 부산 소재(본사 기준) 디지털 신기술(AI, 디지털트윈,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관련 법인 사업자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 간 국내·외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았거나, 투자유치 또는 글로벌 진출 활동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한 기업(활동 증빙서류 필수 제출) ※ 국내·외 기관투자자 기준 '붙임1' 참고 및 제출한 증빙 적정성 검토 예정 <input type="checkbox"/> 재무제표 매출액 기준, 최근 3년('21~'23) 간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한 기업(재무제표 증빙 필수)	
레벨업(Level-UP) 트랙	글로벌(Global) 트랙
<input type="checkbox"/> 디지털 분야 특화 제품/서비스 보유 기업	<input type="checkbox"/> 자체 보유 제품/서비스를 통한 해외 진출 추진 중인 기업 <input type="checkbox"/> 수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사업화 성과가 기대되는 기업

□ 지원 제외대상

- 기업 대상 지원과제로 대학 및 연구소, 협회는 단독 지원 불가
 - ※ 단, 대학 및 연구소 협업 구조로 참여 가능(예산배분 불가)하며, 가점+2점 부여
- 기업의 부도나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최근 3년간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 기준 자본잠식에 해당하는 기업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인 경우
-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기업
- 정부로부터 참여제한 조치중인 자 (기업대표자, 총괄책임자)
- 과제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선정 취소 가능

- 사업수행기관이 자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사업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업기간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 내용으로 타 정부 과제를 기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 내용으로 타 정부 과제와 동시에 선정된 경우
-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신청기업이 타사업의 수행상 법률·규정 위반 또는 불이행 등에 따라 전담기관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등 처분이 확정된 경우

□ 의무사항 주요내용

연번	내용
1	<input type="checkbox"/> C-Level(최고 경영진) 1인 이상 참여 및 협약서 제출
2	<input type="checkbox"/> 지원분야별 성과지표 달성
3	<input type="checkbox"/> 사업 기간 내 과제 수행으로 인한 사업화 및 매출 발생 <input type="checkbox"/> 트랙별 유형에 맞는 디지털 비즈니스 활동 실적 * (레벨업) 투자유치 활동, 타 정부사업 유치, 산학연 연계 성과 등 * (글로벌) 글로벌 전시 참가, 해외지사설립, 해외투자, 해외 MoU 등
4	<input type="checkbox"/> 협약 이후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정부지원금 금액), 보증금지급각서, 청렴이행각서 등 추가 서류 제출 필요
5	<input type="checkbox"/> 사업수행 결과물로 결과보고서, 실적증빙서류, 정산서류 제출 * 사업수행 실적은 사업종료일까지 완료하여야 함

※ 최종 평가 결과에 따라 60점 미만 실패, 불성실 과제는 지원중단, 사업비 환수 가능

□ 우대사항 및 가점

구분		대상내용
우대사항		<input type="checkbox"/> 사업 아이템(서비스)이 명확하고 비즈니스 모델이 우수한 과제 <input type="checkbox"/> 수요처 확보, 매출 발생, 일자리 창출이 용이한 제품·서비스 <input type="checkbox"/> 투자유치 경험, 글로벌 진출 계획을 보유한 기업
가점	+1점	<input type="checkbox"/> 정부지원 사업화, 연구개발 과제에서 '우수' 이상 결과를 받은 기업 ※ 단, 주관기업으로 참여한 사업비 1억 이상 과제로 제한
	+2점	<input type="checkbox"/> 현재 부산 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 소재 기업 ※ 상세위치 <- 링크 접속 <input type="checkbox"/> 대학/연구소 협업 구조로 참여한 기업

□ 신청 유의사항

- 정부지원금은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증빙되지 않는 내용은 무효처리하며, 평가 관련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관련규정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 ICT 기금 운용·관리 규정 내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 접수기한 : 2024. 7. 30.(화) ~ 2024. 8. 19.(월), 14시까지

- 어떠한 경우에도 접수기한(14시) 이후 제출된 서류는 접수불가
- 접수마감 시간은 발주기관의 이메일 도착시간을 기준으로 함.

□ 접수방법 : 이메일(receipt@busanit.or.kr) 접수

※ 메일제목 : (기업명) 2024년 디지털 혁신거점 선도기업 육성 지원

□ 제출서류 : 사업수행계획서 및 붙임 각 1부

※ 아래 서류들은 각각 PDF파일로 변환 및 넘버링하여 1개 폴더로 제출 (기업명.zip)

※ 사업협약 후 이행보증보험(기업부담) 가입, 보증금 지급각서, 청렴이행각서 등 추가 증빙 서류 제출 필요

※ 모든 서류는 '24. 7. 이후 발급본으로 제출

연번	제출서류	수량	비고
1	사업계획서	각각 1부	20페이지 이내 작성 (PDF, HWP파일 모두 제출)
2	발표평가 PT자료	각각 1부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분량 (PDF, PPT파일 모두 제출)
3	사업자등록증	1부	원본 대조필 날인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
5	표준재무제표	1부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21년~'23년)
6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원본 대조필 날인
7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붙임 1】
8	총괄책임자의 NTIS제재정보 확인서	1부	ntis.go.kr > 과제참여관리 > 제재정보조회
9	수행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1부	【붙임 2】
10	참여인력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붙임 3】
11	보안서약서	1부	【붙임 4】
12	청렴이행각서	1부	【붙임 5】
13	전문인력 현황 및 자격증명 서류	1부	별도 제출 (이력서, 전문인력 요건 증빙자료(재직경력, 학위증명서 등),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타	기타 실적 증빙서류	1부	우대, 가산점 해당 기업 관련 증빙 제출

※ 대학/연구소 협업 구조로 참여할 경우, 기관별 해당자료 모두 제출 필요

5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일정 : 2024. 8. 26.(월) 예정 ※ 세부일정은 공고마감 후 별도 안내 예정

□ 평가방법 : 발표평가(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 외부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업 선정
- 제출 증빙서류 검토 및 우대/가산점 적용은 사업담당자가 진행
- 발표평가 전 서류검토 실시(과제당 20분 내외)
- 총괄책임자 직접발표를 원칙으로 함
 - ※ 부득이한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무책임자 발표 가능(공문 제출)
 - ※ 이 외 발표자(참여인력)의 발표는 허용하지 않음
-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최대 2명이며, 외부인력 배석은 과제 관련성 있을 시 배석 가능

□ 평가기준 : 사업 적합도, 제품/서비스 우수성, 사업관리 체계 등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배점
사업 적합도 (25)	<input type="checkbox"/> 본 사업의 목적·방향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10
	<input type="checkbox"/> 목표 시장 분석, 실행 계획 및 추진목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15
사업 경쟁력 (45)	<input type="checkbox"/> 기존 유사 제품/서비스와 차별성 및 혁신성을 보유하고 있는가?	15
	<input type="checkbox"/> 시장조사 활동·전략 체계성 및 실행 가능성이 타당하며 사업 목표 달성 방안이 적정한가?	20
	<input type="checkbox"/>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의 성과 확산(성장성)이 기대되는가?	10
사업관리 (30)	<input type="checkbox"/> 성과확보 계획 및 결과 산출물이 구체적이고 타당한가?	20
	<input type="checkbox"/> C-Level(주요경영인)이 사업 관련 전문성을 갖추었는가?	10
합계		100

※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상기 평가항목 및 배점 변경 가능

※ 평가기준 미달 시 재공고를 통한 기업 선정 예정

□ 합격기준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산술 평균 70점 이상을 득하면 선정,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절사(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70점 이상 기업 다수인 경우, 고득점 순 “우선 협약 대상” 으로 선정

6 문의처

-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글로벌전략사업단 디지털거점조성팀 정아빈 선임
(TEL : 051-749-9366 / E-mail : abeen@busanit.or.kr)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 (3)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4)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 (6)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항
 - (1)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7) 기술보증기금
 - (8)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방식으로 투자하는 외국투자회사